2023-8 세무회계경영저널 2023 세법개정안

2023
8
Monthly Magazine
통권 236호

월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세무회계경영저널

eAnSe.com

30분내 Q&A답글 ○ 즉답829-7575 010-2672-2250

Biz life partner, 온라인재경교육, e러닝, 전직원경영관리아카데미, CEO, CFO, CMO 등 경영진 휴대북, 관리자 점검표 · 실무자학습지

이달의 특집

· 2023 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주요정보]

·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국세청)

안안 세건 회조 계세 법정 인보

안세 회계법인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타

등록번호 영등포 라-0129 · 등록일 2003년 11월 11일 발행인겸편집인 : 이윤선
발행처 (주)안건조세정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41(신길동) 안세빌딩 1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안건조세정보

안세회계법인

829-7557
829-7555

Anse, the Best Answer

eanse.com

ESG컨설팅과 인증,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설계자문, 기업가치평가

PA 전문	1 상장, 코스닥, 대기업의 내부회계 Private Accounting 전문 특화
회계감사	2 소속회계사 115명 + 세무직원 286명 = 성실한 401명 활동
세무대리	3 대형회계법인에서 10년 이상 경력의 숙련된 전공별 회계사
재무자문	4 2020년 매출액 535억원으로 196개 법인 중 10번째 규모
경영컨설팅	5 서울 핵심지역과 광역시 총 21개의 현지밀착 1시간내 사무소
회계기장	6 모두 업무기획·계약·현장실행·품질관리 전 공정 책임수행
창업지원	7 獨自創安(독립, 자율, 창업, 안전) 경영이념과 적법투명회계
가업승계	8 고객현장근무 중심, 사전문제예방 컨설팅 파견과 재택가능

담당회계사·재경컨설턴트 : 경리·재경아웃소싱 업무를 수행할 안세의 전국 사업본부의 소속 공인회계사 등과 분사무소 · 지점

자매회사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서울본사 (영등포)	829-7557 외부감사 · 세무대리 · 회계 · 기장 · 재무 · ESG컨설팅 · 기업가치평가 · IFRS 적용 · 변환 컨설팅 · 내부회계관리제도설계 (Sox 서비스) · 금융자문 · 품질관리심리실 · 준법감시인 · 재경본부운영 · 전문지식정보운영팀 대표이사 박윤종 · 등기이사 장용석 · 김형석 · 고주현 · 안수현 등 75명 등기이사 파트너 / 심리실 : 손세정(준법감시인 겸 상근 심리역) 고두환 · 고영일 · 공희성 · 권창현 · 구수홍 · 김경수 · 김봉수 · 김수범 · 김수영 · 김영근 · 김옥철 · 김종창 · 김준영 · 김준일 · 김형석 · 나경수 · 설찬수 · 박규태 · 박기훈 · 박병준 · 박상현 · 박정열 · 박지은 · 박큰별 · 배익권 · 송형곤 · 양철성 · 유진우 · 유지윤 · 윤훈기 · 이만선 · 이미지 · 이사야 · 이승환 · 이원재 · 이종량 · 임권일 · 임정훈 · 조민기 · 조성민 · 조영우 · 제갈원구 · 진수미 · 표정협 · 최영근 · 최영진 · 한상표 · 허근 · 홍상연 · 홍재권 · 황준호 · 허진영(변호사 : 준법지원역)
서초강남본부	070-7668-6865 강민우 · 곽영미 · 김태현 · 이현섭 · 배문호 · 송태헌 · 최민욱 · 신민석 · 조세용 · 황준호 · 정호신
강남금융본부	070-5101-1651 우성권 · 김용환 · 김수범 · 홍희빈 · 이혜리 · 강용희 · 김현단 · 선지우 · 이원구
가산디지털분실	02-6011-5514 이남재 · 정헌 · 허근 · 황창연
부산경남본부	051-322-8321 공병진 · 이동계 · 윤재훈 + 10인
대전충청본부	042-525-5558 이상훈 · 김형진 · 정대환 + 10인
부산지점	051-819-3308 박지훈 · 이성태 · 양승민 + 5인
부산중앙지점	051-714-7227 이형래 · 홍영표 · 김치현 + 7인
부산센텀지점	051-938-9677 이수영 · 고경호 · 이대건 + 2인
경인지점	032-815-2641 심강수 · 이희곤 · 정영훈 + 4인
일산지점	031-817-4189 김종운 · 송주호 · 최민욱 + 2인
송도지점	032-715-5376 강우석, 이승환, 이희건 + 5인
특별자문역	유찬영 세무사, 홍현영 법무사, 이승환 노무사, 김재득 세무사, 김흥기 · 윤경만 · 박희원 · 이우목 · 이미경 경영지도사

강남지점	516-4199 윤봉진 · 장원택 · 김현민 + 3인
서초지점	6245-7502 정 훈 · 김태경 · 라선희 + 10인
삼성지점	571-3700 정원용 · 임진호 · 안영호 + 4인
여의도지점	6959-2378 고주현 · 양용석 · 황창연 + 5인
센트럴지점	2209-0710 유환철 · 유지윤 · 윤현철 + 4인
영등포지점	2633-9243 차병길 · 원영민 · 강병훈 + 10인
가산지점	2026-8838 조재형 · 이원재 · 고경환 + 3인
중소기업지원센터	312-2255 이익재 · 이준상 · 이승호
품질관리팀	829-7555 박윤종 · 손세정 · 홍재권 · 김형석

안세회계법인의 상장 · 대기업 PA(Private accounting) 업무 상세내역

안세회계법인은 거래소상장법인 코스닥상장회사 재벌집단 대기업그룹 다국적글로벌외투법인등의 내부회계협력자문 PA(Private accounting)회계재무경영자문 아웃소싱용역의 최선봉에서,기업내부재경실무자의 애로점을 최적해결하는 경력자중심 조직임 - 빅4등에서 7년차이상의 베테랑회계사가 소속되어 창업적 활동함.(02-829-7575)

1. ESG컨설팅 · 인증 상장회사 등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작성, 자문, 인증업무, 환경, 사회, 투명경영전략 설계 컨설팅
2. 가치평가 기업전체가치평가(DCF 등), 기업 1주당 주식가치평가, 전환사채의 주식 및 옵션 가치평가, 상환우선주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옵션가치평가, 사모ABL평가, 보유투자주식평가, 이항모형 스톡옵션평가, 고정자산손상평가, 지분증권평가, 영업권 등 무형자산평가, 주식손상평가(관계사, 종속회사), PBR·PER 이용한 주식가치평가, 타회계감사 제출용 매도가능증권평가, 투자기업의 분기별 공정가치평가, 해외자회사 주식평가, 타회사 인수를 위한 기업가치평가, 무담보채권평가, 비상장주식의 상증법상 평가, 특수관계인간 주식양수도평가, RCPS용 비상장주식평가, 비상장사의 영업권 평가, 무형자산손상검토, 사회적 가치서비스 창출자문(ESG)
3. 일반재무제표 매년도 재무제표 작성·지원용역, 현금흐름표와 주석작성, 내부경리실무자의 일손부족분 결산보조,원가회계와 제조원가계산.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명세서작성,원가관리와 제품별 공정별 원가계산과정의 엑셀정리집계,제조원가배부용 감가상각비계산과 생산원가반영후 최종결산재무제표작성, 반기재무제표작성, 기업인수합병 영업권대가의 각 사업부 배부용역, 재무결산지원, 재무제표작성과정의 신속·고도화, 건설·조선 공사 등 진행율 검토, 분기·반기·연차 재무제표작성지원협력, 국가중앙행정 각부·지자체 등 결산지원업무, 공기업·공기관 결산지원용역
4. 내부회계분야 내부회계시스템 구축·설계,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구축 및 운영평가지원, 재무관리실태감사와 내부회계지원
5. K-IFRS 관련 국제회계자문 연간일정(평상시 회계쟁점자문, 질문의견서 작성, 분기재무·반기검토 작성지원, 결산마감과 재무제표·현금흐름표·주석 작성, 연결분개재무제표, 외감현장입회대응, 해외모기업 합산재무지원)
6. 외감 아닌 기타 인증업무 합의된 절차에 의한 실사업무, 사업비정산 검토감사, 임의감사, 조성원가추정계산, 연구비 위탁정산
7.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작성·지원·자문용역, 국내외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이익 제거, 연결재무제표 기초이월잔액 검증
8. 사업계획서 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보고서, 사업계획 미래현금흐름검토, 대규모 사업단지 개발지역·오피스텔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스타트업 지원
9. M&A 실사·조사 등 인수대상회사 실사, 내부 임직원 부정적발조사, 자산부채자본실사, 자산양수도거래의 외부평가
10. 화의·법정관리 등 각급 법원 회생조사위원, 회생신청 전반 컨설팅, 관리인 조사보고서의 재검토
11. 외국 · 해외 비지니스 감사보고서 영문번역, 해외투자와 자원개발자금 심사와 실사업무, USGAAP기준, 영문감사보고서
12. 기타 특수업무 기업의 금융감독원 특별심사 감리대응자문, 위탁수수료 예상가격 산정, 컨설팅사의 공기관 제출 인증서류 검토, 사외이사취임, 내부감사(상근, 비상근), 상장사 등 내부 감사위원회 구성원 역할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 8

+교육 · 훈련강의저널
+CEO · CFO · 기업법무저널

www.eAnSe.com

월간 세무회계경영저널은
고객회사와 기업재경실무자의
"명료한 세무판단",
"투명한 회계처리",
"효율적 경영활동"
에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회계법인이 연합하여
공동제작하는
회계·세무·재경 전분야의
정보·자료·전략·컨설팅지
입니다.

8월의 세무일지

일 자	구 분
10(목)	법인·소득세(농특세 포함) 원천징수분 납부 주민세(종업원분), 레저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납부, 증권등거래세 신고납부
21(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25(금)	부가가치세 제1기분 환급(내국법인)
31(목)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교육세(금융·보험업분) 신고납부, 주민세 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 납부, 개별소비세(유류 등), 교통세(교육세·주행세 포함), 주세(교육세 포함) 신고납부, 일용·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 달의 세무신고 Checkpoint

·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국세청) ····· 2

이달의 특집

· 2023년 세제개편안 (기획재정부) ····· 6

Ⅰ. 경제 활력 제고 ····· 6

Ⅱ. 민생경제 회복 ····· 21

Ⅲ. 미래 대비 ····· 31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 38

Ⅴ. 기 타 ····· 52

· 2023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 101

· 부가세영세율과표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액 평가의 기준 · 재정 환율 (8월) ····· 144

이달의
세무신고업무
Checkpoint

복잡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클릭 몇 번으로 끝

- 국세청

□ (개요) 12월 결산법인은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8. 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중간예납 팝업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신고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상반기 사업실적을 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고편의)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면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세정지원)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경남 거제) 소재 중소기업 등 5,068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 '23.1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법인

○ 또한,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합니다.

* 행정안전부로부터 집중호우 피해법인 명단을 수집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약 51만 8천여 개로 지난해 51만 5천여 개 보다 3천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제외)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며,

○ 2023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도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8. 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3. 1. ~ '23. 6.)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 분	계 산 방 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등 차감) × 50%
상반기 실적 중간결산	중간예납세액 = 상반기 과세표준 × 2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익금⊖손금)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세율 × $\frac{6}{12}$ - 상반기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원천징수세액 제공

○ 중간결산하여 신고하는 법인은 전자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해 작성 · 생성한 자료를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파일변환 방식으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월 말), 중소기업은 2개월(10월 말)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우리 경제의 중추인 수출 중소기업을 지속 지원합니다.

□ (추진배경) 국세청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직권연장) '23년 1분기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①수출 중소기업*(4,117개)와 ②관세청·KOTRA 지원대상 중소기업*(767개), ③고용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184개) 등 총 5,068개 법인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직권연장 /세정지원 대상▐

구 분	세정지원 대상	기업수
• 수출 중소기업	•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4,117개
	• 관세청*·코트라(KOTRA)**의 지원대상 중 중소기업 * 수출제조우수중소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767개
•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184개

○ 아울러 집중호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는 법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하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사업상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법인이 상반기 실적을 중간결산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재해 상실 비율 = 상실된 자산가액 ÷ 상실 전의 자산총액

3.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신고 전) 홈택스의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과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 (신고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클릭

* 일반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4. 모바일로 편리하게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 (신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후 손택스를 통해 납부*하시면 편리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이달의 특 집

2023년 세제개편안

– 기획재정부 –

Ⅰ.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공제율 – 대/중견/중소 :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 (공제율) 3% ○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 반도체, ② 이차전지, ③ 백신, ④ 디스플레이, ⑤ 수소, ⑥ 미래형 이동수단, ⑦ 바이오의약품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❶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❷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❸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❹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❺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❻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❼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❽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사업화시설) 4개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 ❶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❷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❸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❹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 · 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 · 원천기술 대상 ○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 미래차, ② 지능정보, ③ 차세대S/W ④ 콘텐츠, ⑤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 차세대 방송통신, ⑦ 바이오 헬스, ⑧ 에너지·환경, ⑨ 융복합소재, ⑩로봇, ⑪ 항공·우주, ⑫ 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 · 원천기술 대상 확대 ○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 · 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 · 법인세 감면 ○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 · 복귀하는 기업 ○ (감면내용) ❶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5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❷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 3년 100% + 2년 50% ○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 · 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추 가> ○ (적용기한) '24.12.31.	□ 감면 폭 · 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❶ 7년간 100% + 3년간 50% ❷ (좌 동) ○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15, §1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공제대상) ❶ 광업권 · 조광권 취득 투자 ❷ 광업권 · 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❸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 (적용기한) '26.12.31.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 배제 대상 추가 ○ (좌 동)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개 정 안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 · 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기한 연장

① 기술 이전 · 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술 이전 · 대여소득 세액감면 ○ (대상) 중소 · 중견기업 ○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소득의 25% 세액감면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 (감면율) 50% ○ (적용대상) 중소 · 중견기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대상) ❶ 또는 ❷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❶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❷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 · 이공 · 의학계 학사 이상 ⓑ 국외 대학 ·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 ⓒ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추 가>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감면율) 10년간 50%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 · 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 (좌 동)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 (적용기한) '23.12.31.	○ (좌 동) ○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외항선 ·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 월 3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 (좌 동) ○ 월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 노인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컴퓨터학원 등 ○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대상) 중소 · 중견기업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요건) ❶과 ❷를 모두 충족 ❶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❷ (좌 동) ○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③ 고용유지 중소 · 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10)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현 행	개 정 안
□ 사후환급 최소 기준 ○ 1회 거래가액 3만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 1만 5천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1회 한도 상향 ○ 70만원 미만 ○ (좌 동)
□ 도심환급 한도 ○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한도 상향 ○ 6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 600억원 ○ (기본공제) 10억원 ○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 (좌 동)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연부연납 기간) 5년	○ 20년
○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좌 동)

<개정이유> 중소 ·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상속인의 가업종사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자산 유지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 (적용요건) ❶~❹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❶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❷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❸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❹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규칙 :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 : '24.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 (좌 동) ○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4)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18의4, §57⑤)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율 5% 이상 ○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회사 요건 완화 ○ (좌 동) - 지분율 2% 이상 ○ (좌 동)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 (대체취득 시한) 1년 ○ (적용대상)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① × ②*) * ①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 (사후관리) 과세이연 적용 후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유가증권 추가 ○ 2년 ○ (좌 동) ○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토지, 유가증권)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 일시상각충당금 –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 (좌 동)

<개정이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 예외 신설 ○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 예외 신설 ○ (좌 동)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② 분할납부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적용기한) '24.1.1.~'26.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 (좌 동) – '27.1.1.~'29.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신 설>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연 700만원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❶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❷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대상) ❶~❷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❶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❷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추 가> ○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구주매입 제외) ○ (공제액) – (❶, ❷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신 설>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 ❶~❸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❶ (좌 동) ❷ (좌 동) ❸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 (좌 동)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좌 동) – (❸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❷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❸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추 가>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 · 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①13)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 · 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 · 운용 용역 ❶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❷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❸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❹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❺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 ※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❶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❷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❸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❹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❺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추 가> ○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추가 ○ (좌 동) ❻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적용대상) ❶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❷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❸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❹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시 과세특례 ○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 (좌 동) ○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 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③ · §11의4④)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 · 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 양도가액 – (피합병 · 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양도가액 – (피합병 · 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 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300~1,8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1,800만원</td><td>1,500만원</td><td>500만원</td><td>300만원</td></tr>
</table>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td><td>□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600~2,000만원
<table>
<tr><th colspan="3">상환기간 15년 이상</th><th>상환기간 10년 이상</th></tr>
<tr><td>고정금리 + 비거치식</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d>기타</td><td>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td></tr>
<tr><td>2,000만원</td><td>1,800만원</td><td>800만원</td><td>600만원</td></tr>
</table>
○ 기준시가 6억원 이하</td></tr>
</table>

<개정이유> 서민 ·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5.12.31.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좌 동) – 연 3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안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 · 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❸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30%
❹ 전통시장	40%
❺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개 정 안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 (좌 동)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❶ 신용카드	15%
❷ 현금영수증 · 체크카드	30%
❸ 도서 · 공연 · 미술관 · 박물관 ·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❹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❺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좌 동)

<table>
<tr><td>○ (공제한도)
<table><tr><td colspan="2">총급여 / 공제한도</td><td>7천만원 이하</td><td>7천만원 초과</td></tr><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만원</td><td>250만원</td></tr><tr><td rowspan="3">추가공제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만원</td><td rowspan="2">200만원</td></tr><tr><td>대중교통</td></tr><tr><td>도서공연등</td><td>–</td></tr></table></td><td>○ (좌 동)</td></tr>
<tr><td>○ (적용기한) '25.12.31.</td><td>○ (좌 동)</td></tr>
</table>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신 설>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좌 동) – 3천만원 초과 :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현 행	개 정 안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❶ 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❷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 · 재료비 등 직접비용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추 가>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봉사일수 × 8만원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❶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❷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❺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 (좌 동) ❺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 ○ (환급액) 휘발유·경유 : 250원/ℓ, LPG부탄 : 161원/ℓ (전액) ○ (한도) 연간 3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 (조정주기) 매년 조정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 (좌 동) ○ 비정기 조정

○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 + 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내에서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등을 고려하여 결정	○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개정이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 (세율) 1kℓ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 885,700원/kℓ)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1)

현 행	개 정 안
□ 농 · 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 · 영어비용 등 경감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안
□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 수입금액별 한도
<table>
<tr><th>수입금액 구간</th><th>한 도</th></tr>
<tr><td>100억원 이하</td><td>0.3%</td></tr>
<tr><td>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td><td>0.2%</td></tr>
<tr><td>500억원 초과</td><td>0.03%</td></tr>
</table>
○ 추가 한도
❶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신 설></td><td>□ 손금산입 한도 확대
○ (좌 동)
○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좌 동)
❷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td></tr>
</table>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106①9의3, §106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 (좌 동) – '24.12.31.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 · 판매사 등 ○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 (적용기한) '25.1.1. ~ '27.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 (적용기한) '24.12.31.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금융기관 ○ (좌 동)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❶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❷ 신보 · 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❹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❺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 (특례내용) ①압류 · 매각 유예, 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좌 동)
○ (신청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❶ '22.12.31. 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❷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❸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기한 연장 ○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❶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좌 동)
○ (신청기한) '26.12.31.	○ '27.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공제율 – 음식점업	□ 적용기한 연장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❶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❷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구 분	공제율
❶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❷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 공제한도 특례 ○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좌 동)
<추 가>	– 판매 대행 · 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❶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❷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적용기한 연장
○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좌 동)

– (교육비) 15% – (월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 이하 : 17%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kg (23.39원/ℓ)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좌 동)
<신 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❶ (증여자) 직계존속 ❷ (공제한도) 1억원

	❸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❹ (증여재산) 증여추정 · 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28·§100의29)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1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80만원</td></tr>
<tr><td>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td></tr>
</table>
– 맞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5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80만원</td></tr>
<tr><td>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td></tr>
</table></td><td>□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 맞벌이 가구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1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
<tr><td>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td></tr>
</table>
– 맞벌이 가구
<table>
<tr><th>총급여액등</th><th>자녀장려금</th></tr>
<tr><td>2,500만원 미만</td><td>자녀 1인당 100만원</td></tr>
<tr><td>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td><td>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출산 · 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 · 보육수당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 (좌 동) ○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 · 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액 손금 · 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 판매한 상품 ·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 부대비용 ○ 인건비 <추 가>	□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 (좌 동)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 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 · 양육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 200만원) ○ (공제율) 15% ○ (공제한도) ❶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❷ ❶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 (좌 동)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❶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❷ (좌 동)

<개정이유> 출산 · 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단서 신설>	□ 가입대상 확대 ○ (좌 동)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90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소득상한 요건) ❶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❷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 · 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확대(200→ 400만원) ❸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단서 신설>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 (좌 동)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단서 신설> ○ (적용기한) ' 23.12.31.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 ' 24.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 (적립한도) 월 4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 (좌 동) ○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지역균형 발전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table>
<tr><th>특구명</th><th>감면율</th></tr>
<tr><td>위기지역</td><td>5년 100%+2년 50%</td></tr>
<tr><td>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td><td>5년 50%</td></tr>
<tr><td>연구개발특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td><td>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td></tr>
</table>
*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 (적용기한) '23.12.31.</td><td>□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5.12.31.</td></tr>
</table>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 '24.6.30.	□ 유효기간 연장 ○ '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 · 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 기준 확대 ○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 ○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 한정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 · 회계 · 세무법인 ·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반시 제재 합리화
○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 (좌 동)
○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산가액 평균
○ 지출실적 산정기준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 ❶ or ❷ 선택 가능 ❶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❷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 위반시 제재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제재 합리화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20% ○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 10%	□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30% ○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 20% ○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 10%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 주류매출의 5% 이상 ○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 200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 (좌 동)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현 행	개 정 안
□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 · 숙박비 · 실비) ○ 부과제외 대상 ❶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❷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삭 제>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신 설 >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1)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2)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3)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td><td>□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table>
<tr><th>구 분</th><th>계 산</th></tr>
<tr><td>과세대상</td><td>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td></tr>
<tr><td>양도차익</td><td>양도가액 – 필요경비</td></tr>
<tr><td>양도소득금액</td><td>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td></tr>
<tr><td>양도소득 과세표준</td><td>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td></tr>
<tr><td>양도소득 산출세액</td><td>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td></tr>
<tr><td>양도소득 결정세액</td><td>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td></tr>
<tr><td>양도소득 총결정세액</td><td>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td></tr>
</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1세대 1주택 비과세
○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규 정 내 용</th></tr>
<tr><td colspan="2">①항</td><td>○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 다음 주택은 보유 · 거주 요건 면제</td></tr>
<tr><td></td><td>1호</td><td>분양전환 주택</td></tr>
<tr><td></td><td>2호</td><td>수용 등 주택</td></tr>
<tr><td></td><td>3호</td><td>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td></tr>
</table></td><td>□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❶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❷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td></tr>
</table>

	5호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②항		'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③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항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⑤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⑥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⑦항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⑧항		보유 · 거주기간 계산 예외
⑨항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⑩항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⑪항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⑫항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現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②항 (現 ⑦)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③항 (現 ③,④)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구 분 / 비과세 범위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 건물 + 토지 전체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④항 (現 ②, ⑤,⑥, ⑧,⑫)	· 보유 · 거주기간 계산 원칙 · 보유 · 거주기간 계산 예외 ·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⑤항 (現 ⑨)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⑥항 (現 ⑩)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❶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②항	상속주택
③항	공동상속주택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
⑤항	혼인 합가주택
⑥항	문화재주택
⑦항	이농 · 귀농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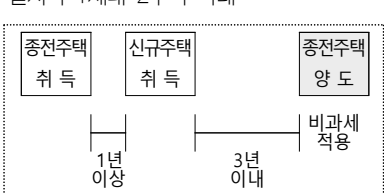

❷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⑨항	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⑩항	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⑪항	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⑫항	이농 · 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시 양도세 계산식
⑬항	이농 · 귀농 적용 절차
⑭항	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⑮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⑯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⑰항	삭제
⑱항	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⑲항	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⑳항	장기임대주택
㉑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㉒항	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㉓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㉔항	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㉕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②항	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③항	상속주택(現 ②, ③, ⑲)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⑤항	혼인합가 주택(現 ⑤)
⑥항	문화재 주택(現 ⑥)
⑦항	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⑭)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現 ⑧)
⑨항 ~ ⑫항	장기임대주택 (現 ⑳~㉕)
⑬항	기타(現 ⑮, ⑱)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 조문 정비 ❶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구 분	규 정 내 용
⑳항	장기임대주택 등 정의 및 특례 적용 요건
㉑항	기간요건 충족 전 특례 적용
㉒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㉓항	등록말소 임대주택 특례 적용
㉔항	특례 적용 신고
㉕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

구분	규 정 내 용
⑨항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現 ⑳+㉑+㉓)
⑩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現 ㉒)
⑪항	특례 적용 신고(現 ㉔)
⑫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現 ㉕)

○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❷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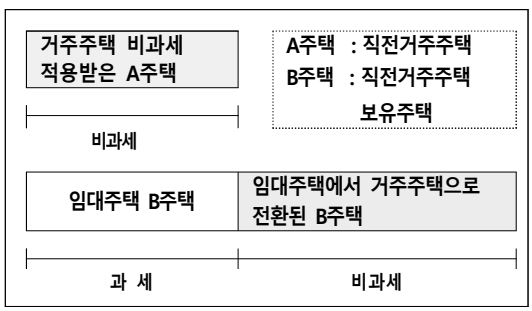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구 분	유 형
1호	수도권 · 광역시 · 특별자치시외 소재 저가 주택
2호	장기임대주택
3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4호	장기 사원용 주택
5호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6호	문화재주택
7호	상속주택
8호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8호2	장기 어린이집
10호	일반주택
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12호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
1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td><td>□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table><tr><td colspan="3">도시지역</td><td rowspan="2">도시지역 밖</td></tr><tr><td colspan="2">수도권</td><td rowspan="2">수도권 밖</td></tr><tr><td>주거 · 상업 · 공업 지역</td><td>녹지지역</td></tr><tr><td>3배</td><td colspan="2">5배</td><td>10배</td></tr></table></td></tr>
</table>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신 설></td><td>□ 거주자 · 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❶ (신탁설정 · 이전 시)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❷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 · 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 · 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td></tr>
</table>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

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①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②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❶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❷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 · 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 금 관련 제품 ○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 적용 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 (좌 동)

<신 설>	□ 세금계산서 작성 · 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현 행	개 정 안
□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추 가>	□ 명단공개 대상 확대 ○ (좌 동) ○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 · 회계부정으로 징역 · 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 · 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 · 회계부정 ○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 · 회계부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 개념 구체화(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②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계산방법 합리화 ①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②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❶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❷'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 · 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 · 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❶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 위반, 전통주 추천 요건 위반 등 ❷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❸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❶,❷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 제한 사유 추가 ○ (좌 동) ❸ 면허 신청법인 · 전환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❹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추 가>	❹ (좌 동) ❺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친족 · 경제적 연관 · 경영지배 관계

<개정이유> 주류제조 · 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44)

현 행	개 정 안
□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 발급한 자 ○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추 가>	□ 부과 대상 추가 ○ (좌 동) ○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❶ 변호사 등 전문직 ❷ 병 · 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❸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❹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 의무발행대상 확대 ○ (좌 동)

❺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추 가>	○ (좌 동) ○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이자소득 <추 가>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 (좌 동)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❶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❷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❸ 법인세 비과세 · 면세 · 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 (좌 동)
<추 가>	❹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❺ 3% 재평가적립금(합병 · 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 · 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 · 가공 · 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의 유통 · 판매소득은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 ·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 운영 근거 ○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 · 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 · 수당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비과세 소득 확대 ○ (좌 동)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제출) 총 발급 건수 · 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좌 동)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 · 치료 ·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 (좌 동) ○ (좌 동)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개 정 안
□ 근로 ·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지급금액 인상 ○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 · 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 과세방식 ○ (원칙) 수익자 과세 ○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❶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❷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 (위탁자 과세) ❶~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❶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❷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 과세체계 정비 ○ (좌 동) – ❶~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❶ (좌 동) <삭 제> ❸ (좌 동) – (좌 동) <삭 제> <삭 제> ❸ (좌 동)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 (예외) ❶~❹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합병차익 한도)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 (좌 동)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좌 동)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 (예외) ❶~❹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❶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❷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❸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❹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추 가>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❺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 (좌 동)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❶×❷) ❶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❷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A) = \frac{\lvert \text{연결사업연도 결손금} \times \text{법인세율} \rvert}{\text{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개별소득금액 및 개별 결손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중소기업 간 합병 시 ○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 제출기한 명확화 ○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 · 시행 ○ (대 상) – ❶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 · 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 ❷ '18.2.13.전에 舊「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 (지정방식 · 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 ·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 (좌 동) ○ (좌 동) – ❶, ❷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 · 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 · 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 보험금지급준비금 ○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도 · 소매업 감면율 구 분 / 소기업* / 중기업 수도권 / 10% / 0% 지 방 / 10% / 5%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구 분 / 소기업 / 중기업 수도권 / 10% ➜ 20% / 0% ➜ 10% 지 방 / 10% ➜ 20% / 5% ➜ 15%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 · 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 적용기한 연장 ○ ~ '24.12.31 취득분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 (적용요건) ❶+❷ ❶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❷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❶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❷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 · 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 · 변제금액 손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❸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❹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 적용기한 연장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 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 (적용기한) '23.12.31.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 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 (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❶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❷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 · 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 · 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❸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❹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❺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❻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의19)

현 행	개 정 안
□ 지역개발사업구역 · 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 투자 · 고용 요건 미달 ○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추징사유 합리화 ○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 · 개발사업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 (공제액) ❶, ❷ 중 큰 금액 ❶ 산출세액 $\times \frac{1}{2} \times \frac{\text{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증가분}}{\text{전체 익금·손금}}$ ❷ 산출세액 $\times \frac{\text{매입자납부 익금·손금* 의 5\%}}{\text{전체 익금·손금}}$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 (상속 · 증여세) 미확정 상속 · 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 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 (부가가치세) 재화 ·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 (소득세) 법인세 과표 · 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 (좌 동) ④ (소득 · 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❶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율 조정 ○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frac{9\%}{1-9\%}$ ≒9.9%)
❷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개 정 안
□ 공모리츠 · 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 (적용대상) 공모리츠 · 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단서 추가>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 (좌 동) – 다만, 다른 공모리츠 · 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 · 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추 가>	□ 납세의무자 추가 ○ (좌 동)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 · 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 납세의무자 추가 ○ (좌 동) ○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필요경비 합리화 ○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 · 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 · 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 특례 대상 · 요건 확대 ○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 (요건) ❶ + ❷ + ❸ ❶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❷ 양도 후 임차 · 직접 경작 ❸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❶ 요건 확대 ❶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 (좌 동)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 · 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취득가액 등 명확화 ○ (좌 동)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 · 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 · 취득시기 명확화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감면한도 합리화 ○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❶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지분의 일부를 양도

<단서 신설>	❷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❶ + ❷ + ❸ ❶ 농지소재지 거주 ❷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 (감면율) 100%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 (요건) ❶ + ❷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 (감면율) 현금 : 10%, 일반채권 : 15% (3년 만기 채권 : 30%, 5년 만기 채권 : 40%)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❶ + ❷ + ❸ ❶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❷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❸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 (과세특례) ❶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❷과세이연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 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요건) ❶ + ❷ ❶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 · 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❷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❶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❷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안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 (좌 동)

<신 설>	○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 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 (가산세) 공급가액의 1%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 (좌 동)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포기신고 ○(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신 설>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 (좌 동) ○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 2)

현 행	개 정 안
□ 전기 · 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추 가> ○ (적용기한) '25.12.31.	□ 면제 대상 추가 – (좌 동)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 ○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 * ❶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❷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❸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❹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❺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개 정 안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 ①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②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①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②수협은행 → 조합 · 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6.12.31.

<개정이유> 농 · 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 (대상) ❶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❷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❸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 (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 (좌 동) ❹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 (좌 동)

<개정이유> 주류 거래 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단서 신설>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 (좌 동)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신 설>	○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 면제 ·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 면제 경정청구 ○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 제출의무
<table>
<tr><th>보고서</th><th>제출의무</th></tr>
<tr><td>개별기업보고서</td><td rowspan="2">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td></tr>
<tr><td>통합기업보고서</td></tr>
<tr><td>국가별보고서</td><td>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td></tr>
</table>
○ 제출기한
<table>
<tr><th>보고서</th><th>제출기한</th></tr>
<tr><td>개별기업보고서</td><td rowspan="3">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td></tr>
<tr><td>통합기업보고서</td></tr>
<tr><td>국가별보고서</td></tr>
</table></td>
<td>□ 개별 · 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12개월→6개월)
○ (좌 동)
○ 제출기한
<table>
<tr><th>보고서</th><th>제출기한</th></tr>
<tr><td>개별기업보고서</td><td rowspan="2">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td></tr>
<tr><td>통합기업보고서</td></tr>
<tr><td>국가별보고서</td><td>(좌 동)</td></tr>
</table></td></tr>
</table>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 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금융회사 등 ○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26의2⑥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특례대상 확대 ○ (좌 동)

– 조세불복 결정 · 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 조정권고시 : 경정청구일 ·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 ·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 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추 가>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범위 ○ 법인 <단서 신설> ○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개 정 안
□ 그룹의 정의 ○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단서 신설>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 (좌 동) ○ (좌 동)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정의 ○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❶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❷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❸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❹ 위의 ❶~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현 행	개 정 안
□ 최종모기업의 정의 ○ ❶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 · 간접 소유하고 ❷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 (좌 동) ○ 그룹의 본점
<추 가>	○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 · 102 신설)

< 법 개정('22.12) 내용(§62②)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개 정 안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1~6: 당연제외)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임의제외) ○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신 설>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 (원칙) 좌 동 ○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❶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 (좌 동)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신 설>	○ (좌 동) ❷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신 설>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 (좌 동) ○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❶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 계산 ❷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❶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❷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❸ (관리요건) ❶ · ❷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❶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❷기업별로 배분 ❶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배분비율 = 50\% \times \frac{해당\ 국가의\ 종업원수}{모든\ 국가의\ 종업원수} + 50\% \times \frac{해당\ 국가의\ 유형자산}{모든\ 국가의\ 유형자산}$ * 모든국가: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국가 ❷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배분비율 = 50\% \times \frac{해당\ 기업의\ 종업원수}{모든\ 기업의\ 종업원수} + 50\% \times \frac{해당\ 기업의\ 유형자산}{모든\ 기업의\ 유형자산}$ * 모든기업: 추가세액 배분받은 국가內 기업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❶ (좌 동) ❷ ① · 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 · 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 특례적용 내용 추가 ○ (좌 동)
<추 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❶개별 계산*, ❷투시과세처리**, ❸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신 설>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신 설>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 납부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 · 납부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	□ 신고 · 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 (좌 동) ○ (좌 동)

<신 설>	○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 · 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신 설>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❶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 ❷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❸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❹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 ❺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관세]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관세법 §2, §110② 등)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110의2)에 분산되어 규정 ○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의2 통합조사 포함) ○ (통합조사 원칙, 법 §110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 · 이관 ○ 관세 과세표준 · 세율 · 세액을 결정 · 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 ·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 신고 · 제출 자료 보관 의무 ○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추 가>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년 ○ 보관방법 – 장부 · 서류, 정보보존 장치 <추 가>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 보관 의무 부여 ○ 보관대상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 (좌 동)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 · 제출 자료 보관 의무 ○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추 가>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년 ○ 보관방법 – 장부 · 서류, 정보보존 장치 <추 가>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 · 보관 의무 부여 ○ 보관대상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 (좌 동)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개정이유>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 · 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37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증명자료* *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계산하기 위한 자료	□ 자료요구 사유 추가 ○ (좌 동)

○ (자료제출 방법 · 범위) ○ (요구시기) – 세액심사 시 <추 가>	○ (좌 동) – 관세조사 시

<개정이유>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4.1.1.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

(5)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83①,②, §108②)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대상 ○ 9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협력·일반특혜 관세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 용도세율 신청제외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용도외 사용 및 양도 ○ (원칙)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 ○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 (좌 동) <삭 제>
□ 사후관리 대상 ○ 용도세율, 관세감면, 분할납부 <신 설>	□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 (좌 동) ○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개정이유> 용도세율 제도 조문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6)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관세법 §8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개정이유> 품목분류 결정 관련 규정 보완

(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 · 알선한 경우 ○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하는 경우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 관세포탈 → 관세탈루 ○ (좌 동)

<개정이유>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관세법 §116, 관세령 §141의4)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 (좌 동)
<추 가>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개정이유>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정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관세법 §161①·④)

현 행	개 정 안
□ 견본품 반출 · 채취 대상 ○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반출 가능 <추 가>	□ 대상 확대 ○ (좌 동) ○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 반출 가능

<개정이유> 선상 견본품 채취 · 반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견본품을 반출 · 채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164⑤)

현 행	개 정 안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추 가>	□ 관리사항 변경 <삭 제> ○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 · 관리 *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개정이유>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 · 관리 의무 법령화

<적용시기> '24.1.1. 이후부터 적용

(11)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의 자격 등 ○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년 지나지 않은 자 <추 가>	□ 요건 변경 – (좌 동) <삭 제> – (좌 동)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보세사 시험 응시분부터 적용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관세법 §175)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추 가>	□ 결격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관세법 §206①)

현 행	개 정 안
□ 휴대품 유치* 사유 *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 ○ 수출입 관련 허가·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추 가>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 (좌 동) ○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휴대품 유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

(14)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관세법 §216·§277⑤, 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추 가>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좌 동)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개정이유>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

(15)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관세법 §222의2 및 관세칙§7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개정이유> 국제항 내 물품 운송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 분부터 적용

(16)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 (제재수단)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제재사유 - 거짓 · 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좌 동)

<개정이유>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부터 적용

(1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 §246의2②, 관세령 §251의2)

현 행	개 정 안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 수리할 수 없는 경우 : ❶ 검사대상 물품 :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추 가> ○ 수리할 수 있는 경우 :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❶ (좌 동) ❷ 포장용기 · 운반수단,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 (좌 동)

<개정이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 물품검사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관세법 §327의2·§327의3, 관세칙 §87)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 · 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 · 감독 위반
<추 가>

○ 처분 내용
–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 · 부정한 지정 : 지정취소
– 그 외 위반 사유 :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신 설></td><td>□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 (좌 동)

– 시정명령* 위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 (좌 동)

–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업무정지 기준>
<table>
<tr><th>구 분</th><th>1차</th><th>2차</th><th>3차</th><th>4차</th></tr>
<tr><td>지정기준 미달</td><td rowspan="3">3개월</td><td rowspan="3">6개월</td><td rowspan="3">1년</td><td rowspan="3">지정취소</td></tr>
<tr><td>지도 · 감독 위반</td></tr>
<tr><td>시정명령 위반</td></tr>
<tr><td>비밀유지의무 위반</td><td>1년</td><td>지정취소</td><td>–</td><td></td></tr>
</table>
</td></tr>
</table>

<개정이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21의10, §121의11)

현 행	개 정 안
□ ❶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❷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면제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2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 '26.12.3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21)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례법 §13)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 중소기업 <추 가>	□ 대상 확대 ○ (좌 동) ○ 중소기업이 아닌 농 · 어업인

<개정이유> 농 · 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

(22)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특례법 §36의2 신설, FTA특례령 §4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 · 면제 규정 부재 →「관세법」 규정* 적용 * 「FTA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적용 (「FTA특례법」 §3①) ○ (원칙) 보정이자 징수 ○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면제(「관세법」 §38의2⑤)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FTA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발행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 면제사유 명확화 ○ (좌 동)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 ❶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❷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개정이유>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국세 제반 분야]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 (예외) ❶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❷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 (좌 동)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❷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 적용제외 확대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 · 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추 가>	□ 적용제외 확대 ○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 · 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좌 동)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상속 · 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 ·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 금고 이상의 형 ○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 (좌 동) ○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 · 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 임기 3년 ○ 1차례 중임 가능	□ 임기 확대 ○ (좌 동) ○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조세심판원장 ○ 상임조세심판관 : 전원(8인) ○ 비상임조세심판관 :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 구성 인원 합리화 ○ (좌 동) ○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추 가>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 (좌 동)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 ·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 ·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현 행	개 정 안
□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 (좌 동) ○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 체납자 ○ 세무공무원 ○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추 가>	□ 제한 범위 확대 ○ (좌 동) ○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 매각결정기일 ○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개 정 안
□ 공매보증 반환 대상 ○ 개찰 후 :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 매수인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 차순위 매수신청인 <추 가>	□ 대상 확대 ○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 (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❶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❷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 (좌 동)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❶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❷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인지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령	인지세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교육세칙
▪ 농어촌특별세법	농특법	농특령	농특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특례법	FTA특례령	FTA특례칙

◎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Ⅰ. 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	5%		10%		15%
중견기업	7%	→	10%	+	10%	⇨	20%
중소기업	10%	→	15%		15%		30%

□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②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 · 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州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 · 발표할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중소 ·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R&D 세액공제 개요

□ 기업 연구 · 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구분	일반		신성장 ·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1)	40~50%2)
중견기업	8～15%	40%	20～30%1) (코스닥 상장 25～40%)	30~40%2)
대기업	최대2%	25%	20～30%1)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 10

* ☐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이동수단 (+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①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❶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❷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❶ 미 · 중 · 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 · 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❷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 전기차 부품 제조)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 (개정 내용) 유턴기업 ❶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❷업종요건 완화

❶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 · 법인세 감면

*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2년 감면)

❷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② 기대효과

□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 · 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①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 RE100 선언 :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 중소 ·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 · 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50%)

② 감면 적용품목

□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 · 연료전지(2개) 생산 · 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 개정 이후 관계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②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 '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

○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①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한도(억원) : 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특 례	ㅇ 대상자산 : 가업기업의 주식 ㅇ 내용 :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사후관리 (5년)	ㅇ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가업 경영 ㅇ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ㅇ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② 추진 배경

□ 중기중앙회 ·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소 ·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증여세 최고세율(%): (일) 55 (한) 50 (프) 45 (미) 40 (독) 30 (영) 20 (OECD평균) 26

○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 가업상속 · 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① 제도 개요

□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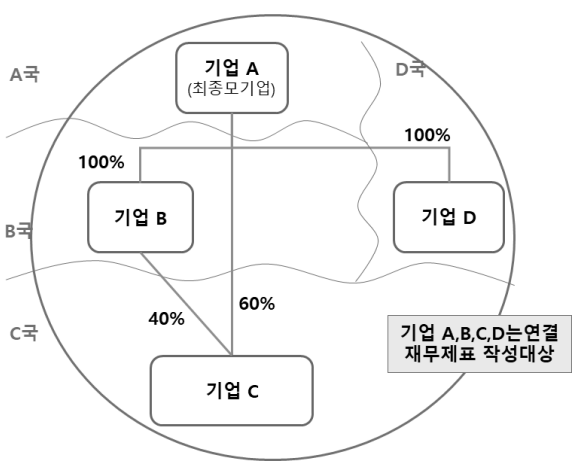

○ 각 개별기업 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 기업A는 기업B · C · D를 직 ·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 기업그룹(A · B · C · 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국가별 실효세율 · 추가세액 계산방식

❶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❷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❶법인세비용	200	50	45
❷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❸조정대상조세(❶+❷)	250	55	45
❹당기순이익	800	450	255
❺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❻글로벌최저한세소득(❹+❺)	1,000	500	300

○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55+45)❸÷(500+300)❻),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❻)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text{ 소득산입비율} = 1 - \frac{\text{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text{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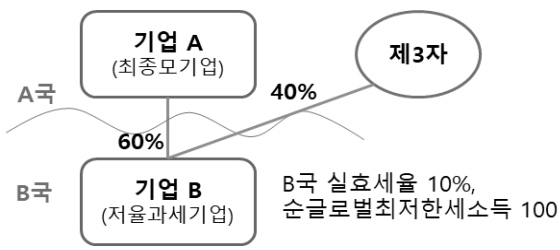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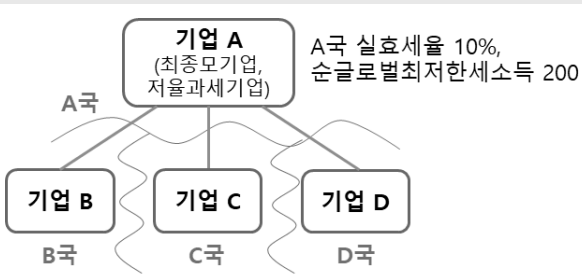

	B국	C국	D국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③ 배분비율

▸B국 = 50%×0.7 + 50%×0.3 = 50%

▸C국 = 50%×0.2 + 50%×0.4 = 30%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맞춰 1년 유예('24.1.1. → '25.1.1.)

○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

*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 '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

○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아울러,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취득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 노력 지원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① 현행 제도 개요

□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법인세 과세

○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주로 활용하여 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법인세 과세

○ 투자자명부 및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산은, 수은 등 → 기업구조혁신펀드[모펀드] → 민간 자펀드
<1차 출자> <2차 출자>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현행 제도 개요

□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집단의 소유 · 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①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 · 등록 · 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현행 제도 개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Max(ⓐ,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❶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❷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 120% 초과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① 제도개요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공제한도) 상환기간 · 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구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현행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 근로자의 신용카드 · 직불카드 ·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 '25년 말)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공제대상</td><td>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td></tr>
<tr><td>공제율</td><td>○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td></tr>
<tr><td>공제한도</td><td>
<table>
<tr><th colspan="2">총급여
공제한도</th><th>7천만원 이하</th><th>7천만원 초과</th></tr>
<tr><td colspan="2">기본공제 한도</td><td>300</td><td>250</td></tr>
<tr><td rowspan="3">추가공제 한도</td><td>전통시장</td><td rowspan="3">300</td><td rowspan="2">200</td></tr>
<tr><td>대중교통</td></tr>
<tr><td>도서공연등</td><td>-</td></tr>
</table>
</td></tr>
</table>

② 개정 내용

□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23.4.1.~'23.12.31.)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❶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❷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❶) × 30%(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구 분	현행	개정안	차이
5천만원 기부	1,350만원*	1,550만원**	+200만원
1억원 기부	2,850만원	3,550만원	+700만원

* (1,000만원 × 15%) + ((5,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000만원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000만원) × 40%)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 · 학계 · 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

(5)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 및 세율조정방식 개선

① 개정 취지

□ 물가연동제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주세율에 의무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어 소폭의 세율 인상이 대폭적인 주류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작용

○ 소주 등 종가세 적용 주류와 과세형평을 위해 '20년 도입된 이후 맥주 1병(500㎖) 당 3~15원 수준 인상

○ 소폭의 주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과정의 마진도 가격에 반영해 소비자 부담이 대폭 증가(500~1,000원 인상)

⇒ 주세율 조정이 주류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

② 현행 방식과의 차이점

□ 현행 물가연동제는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주세율을 의무 · 강제적으로 조정

1) 세율 = 직전연도 세율 × (1 + 가격변동지수2))
2) 가격변동지수: 직전 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70~130%의 범위에서
다른 주류와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결정

□ 개정안은 법률로 기본세율을 규정하되, 필요시 시행령으로 기본세율의 ±30% 내에서 탄력세율로 조정

○ 물가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상황이더라도 주류가격에 변동이 없으면 세율도 그대로 유지 가능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

① 현행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개요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는 ❶기본한도와 ❷수입금액별 추가 한도를 합하여 산정(소득세법 §35, 법인세법 §25)

		손금산입 한도 = ❶ + ❷
❶기본한도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❷수입금액별 (=매출액) 추가 한도	100억원 이하	수입금액 × 0.3%
	100~500억원	3천만원 + 100억원 초과 금액 × 0.2%
	500억원 초과	1.1억원 + 500억원 초과 금액 × 0.03%

□ 공연 · 전시회 · 문화재 관람 입장권 등에 사용된 문화 기업업무 추진비의 경우 손금산입 한도의 2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기업이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 손금산입 한도(❶+❷)의 10%까지 추가 손금산입 허용

○ (인정 범위) 「전통시장법」 상 전통시장 구역 내 지출액

○ (사용처 제한) 유흥업 등 소비성서비스업 지출액은 제외

⇨ 기업의 전통시장 내 지출을 촉진하여 내수활력 제고 및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

① 환급제도 신설 배경

□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면세 판매시 자동차 판매자 등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어, 차량 단종 또는 가격 인상으로 개인택시사업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기획재정부는 개인택시 차량 면세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불공제 문제 해결 방안을 2023년 정기회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경우 택시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 소비자 부담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이에 자동차 판매자가 공급하는 택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종료하고 과세 전환하면서

○ 개인택시사업자(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후환급제도 신설

② 환급제도 개요

□ 간이과세자 개인택시 사업자는 택시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

○ 환급대행 등을 통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환급 절차 부담 완화 예정(구체적 절차는 대통령령 등에 마련)

(3)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① 제도 개요

□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인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체납에 따른 압류 · 매각 유예, 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②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자, 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한 자

②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개정취지) 불확실한 경기여건 등으로 중소기업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제지원 확대 · 연장

○ 징수유예 확대를 통해 조세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사업실패로 일시적으로 세금 납부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 (개정내용) 특례 대상인 재기중소기업인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현재 신청 접수 및 심사 진행 중(4월~)

Ⅲ. 선제적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① 도입 배경

□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한도를 '14년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소득 상승, 전셋집 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제도 마련

* 1) 소비자물가('14.1~'23.6.) : 93.7 → 111.1, +18.6%
2) 1인당 명목국민총소득(만원): ('14) 3,095 → ('22) 4,249 [+37.3%]
3) 주택가격('14.1~'23.6.) : 83.5 → 95.6, +14.5%
4) 결혼비용: 신혼집 2.8억원, 혼수 0.2억원 등 3.3억원('23년, ㅇㅇ결혼정보업체)
5) 주택매매/전세가격(억원, '23.6월, 한국부동산원): (전국) 3.8/2.2 (수도권) 5.5/3.0

□ 또한,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OECD최고수준인 점, 부모입장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해외사례 등도 고려해 결정

<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 >

구 분	순위	국가	최고세율(%)
증여세 운영 (24개국) ☞ 평균 26%	1	일본	55
	2	한국	50
	2	스위스	50
	4	아이슬란드	46.2
	5	프랑스	45
	6	미국	40
	7	스페인	34
	8	아일랜드	33

구 분	순위	국가	최고세율(%)
증여세 운영 (24개국)	9	터키	30
☞ 평균 26%	9	독일	30
	11~24	벨기에, 칠레, 영국, 네덜란드, 헝가리, 핀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그리스, 포르투갈, 폴란드, 이탈리아: 4~27%	
증여세 미운영 (14개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웨덴, 라트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멕시코,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체코, 에스토니아		

* 1) 증여세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벨기에·헝가리·룩셈부르크·핀란드에 이어 하위 5번째
2) 일본은 결혼자금 용도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 천만엔(약 1억원) 공제

② 혼인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줄어드는 세부담은?

※ (전제) 증여 전 10년 간 공제받은 금액 없고, 신고세액 공제(3%) 미적용

□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1억 5천만원 증여하는 경우
- ○ (현행)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세율 10%)에 대한 증여세 1천만원 부담
- ○ (개정) 5천만원 공제 + 혼인공제 1억원 적용되어 증여세 없음

③ 재산용도 제한을 하지 않은 이유

□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건 간소화
- ○ 결혼자금의 유형, 결혼비용의 사용 용태가 다양하고 복잡하므로 용도를 일일이 규정할 경우 현실의 다양한 사례 포섭 불가능
- ○ 재산용도 제한 시 신혼부부가 증빙자료 보관 · 제출 및 과세관청에 신고해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 과도

□ 재산용도를 제한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증여재산인지 타 재산인지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곤란*

* 예)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해당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 곤란
예) 결혼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출상환하는 경우 결혼용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곤란

□ 재산용도를 제한하는 대신에 ❶공제한도 설정, ❷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 후 2년(총 4년)으로 한정, ❸증여재산 범위도 제한*

* 고저가 양수도, 주식상장이익 등 혼인증여공제 취지와 맞지 않는 증여추정·증여의제 등은 공제적용 배제

④ 공제기간을 혼인 전 2년, 후 2년 이내로 설정한 이유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제도 취지상 일반 증여재산 공제와 같이 공제기간을 장기간(10년) 설정하는 것은 부적절

□ 청약, 대출 등으로 혼인신고일과 실제 결혼 시점이 상이한 경우 많아 공제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음

⇒ 결혼 전후로 공제기간을 한정하여, 4년(결혼 전 2년 이내, 후 2년 이내)으로 설정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① 자녀장려금(CTC) 개요

□ (도입목적)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14년 도입)

□ (지원대상) 근로 · 사업 ·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산정방식)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2가지로 분류하고, 소득과 자녀수에 따른 CTC 지급액 산정

❶ 소득요건 (만원)		❷ 재산요건		❸ 최대지급액 (만원)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4,000 미만	가구원 재산합계액	2.4억원 미만	자녀 1명 당	80
		※ 1.7억원 이상 50%감액		※ 소득수준에 따라 50~8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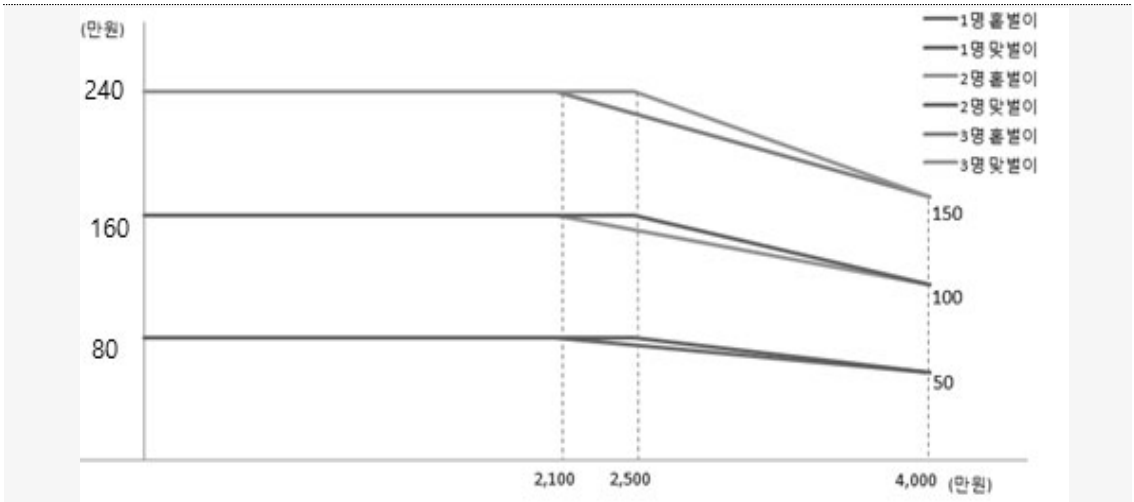

○ (지급시기) 다음 해 9월 지급

○ (지급실적) 58만 가구, 0.5조원(`22년 지급)

② 자녀장려금 확대 배경 및 내용

□ 자녀 양육가구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자녀장려금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확대

○ (소득요건) 급여 인상 등 소득수준 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득상한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

○ (최대지급액) 자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을 현행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③ 자녀장려금 대상인원 확대 및 지급금액 증가 효과

□ (수혜가구) 현행 58만 가구에서 약 104만 가구로 확대(+46만 가구)

□ (지급금액) 현행 0.5조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0.5조원)

(3-1)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① 개정이유 및 효과

□ (개정이유) 출산 ·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현행 10만원)가 '0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저출생 현상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 한도 상향

□ (개정효과) 출산 · 보육수당을 지급받는지 여부 및 지급액 수준, 개인별 급여 수준에 따라 세부담 경감효과에 차이가 있음

* (사례) 총급여 5천만원인 근로자가 출산·보육수당 매월 20만원 지급받는 경우 세부담 감소 효과 : △18만원 수준 (비과세소득 증가액 120만원 × 세율(15%))

- (현행) 월 10만원 × 12월 = 120만원 비과세 → (개정안) 240만원 비과세

(3-2)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① 제도 개요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등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 및 필요경비 인정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근로자에게 출산 · 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

○ 단,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 필요

⇨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 양육 지원금의 손금 · 필요경비 인정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지원

(4)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① 제도개요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3% 초과 사용금액
공제대상 비용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 비용 ○ 장애인보장구 및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 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ㅇ 산후조리원 비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1회 200만원 한도)
공제한도	ㅇ 근로자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ㅇ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② 개정내용 및 이유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출산에 수반되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해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 보육 ·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6세 이하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를 폐지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

① 개정 취지

□ (현행)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의 경우 소득이 없거나 비과세 대상 소득만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음

ㅇ 육아휴직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됨에 따라 상품 가입이 불가

□ (개정이유) 근로관계 법령 상 육아휴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는 점을 고려하여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① 개정 취지

□ (현행) 청년도약계좌* 등 소득요건이 있는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직전연도 소득(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을 기준으로 소득 판단

* 소득기준: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 다만, 매년 1~7월 중 가입* 시에는 직전연도 소득확인 증명이 없어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가입하고, 추후 직전연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배제

* 통상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은 7월 초부터 가능

□ (개정이유) 1~7월 중 가입하는 경우로서 직전연도 소득확인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전전연도 소득 기준도 인정함으로써 가입 이후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사례 방지

② 적용시기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따라서 세제혜택 적용

(3)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① 개정 취지

□ (현행) 청년형 장기펀드*의 최소 가입기간은 3년으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에 따른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연 6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 가입한 펀드에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도 가입 후 3년 이내에 가입 상품 변경 불가

□ (개정이유) 청년형 장기펀드 간 전환·이체는 해지로 보지 않고 추징하지 않음으로써 청년층의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

(4)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① 제도개요 및 개정내용

□ (납입)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계좌(IRP) 등) 납입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한도로 12%,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 (운용)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

□ (수령) 연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에 대해 저율(3~5%) 분리과세
⇒ (개정)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

<현 행>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과세방법
1,200만원 이하	분리과세(3~5%)
1,200만원 초과	분리과세(15%)

* 종합과세 선택 가능

⇒

<개정안>

사적연금소득 합계액	과세방법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3~5%)
1,500만원 초과	분리과세(15%)

* 종합과세 선택 가능

② 세부담 완화 배경

□ 분리과세 기준금액이 '13년 이후 유지되어 온 점, 그간 물가상승 및 노후생활비 증가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① 제도 개요

□ 조세불복 시 소액사건 등 경미한 사항*은 국세심사위원회를 생략하거나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처리 가능

* 소액청구 중 ①사실판단 사항이거나 ②유사 결정례가 있는 경우

○ 조세불복은 국세심사위원회(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관회의(조세심판)를 거쳐야 하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예외 허용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 취지)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소액사건 범위 확대

○ 현행 3천만원 기준은 90년대에 규정* → 경제규모 성장 등을 감안하여 기준 조정 필요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98년 / 조세심판: '96년

□ (개정 내용) 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 신청 또는 청구 시 소액사건 범위를 확대 (3천만원 미만 → 5천만원 미만)

(2)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① 제도 개요

□ 보정기간(신고납부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부터 1년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부족세액에 부과하는 과소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납세자의 조기 수정신고를 유도하고, 「국세기본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

○ 「국세기본법」은 '19.12월 개정을 통해 가산세 감면율이 상향*되었으나, 「관세법」은 국세기본법 개정 이전과 동일한 수준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 3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10% → 2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 → 현행유지

○ 내국세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관세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 (개정내용) 「관세법」 상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현행 및 개정안>

현 행	100%	20%	10%		0%
개 정 안	(동 일)	30%	20%	10%	0%

(3)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

① 제도 개요 및 수수료 폐지 이유

□ (제도 개요) 세관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출입신고인에게 검사에 따른 수수료 부과

*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교통비·실비 등
(최근 5년간 연간 수수료 규모 : 평균 약 2,500만원)

□ (폐지 이유) 수출입물품 검사가 개인의 신청이 아닌 국가의 필요에 의해 시행되는 점을 감안
→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4)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개정이유

1 개관규정 및 개괄규정 부재로 양도세 큰 틀 이해 어려움

○ 부동산 양도세는 일반 국민(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고 계산구조가 복잡함에도 양도세 전체 구조를 설명하는 개관규정 부재

○ 각종 특례(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 제외 등)의 경우 여러 세부 유형이 존재함에도 개괄규정 및 세부 유형 제목 없이 병렬적 서술*

* 같은 조(條)에서 여러 세부 유형을 각 항(項)별로 서술하고 있으나, 조(條)와 달리 항(項)은 제목이 없어 특례 내용 쉽게 파악 곤란

2 잦은 법령개정이 누적되어 양도세제 지나치게 복잡 · 난해

○ 부동산가격 과열시 과세 강화, 침체시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이 누적되어 양도세제 복잡 및 조문 내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중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3 서술식 장문(長文), 상이한 내용 동시 기술 등으로 가독성 저하

○ 복잡한 과세요건 등을 단순 나열식으로 기술하여 문장 길이가 길고 한 조(條)에 딸린 항(項)이 많아 의미 파악 및 이해 곤란

○ 같은 조 · 항에서 유사성이 적은 내용 동시 기술, 예외의 예외 표현 사용 등으로 인해 법령 수요자인 일반 국민 혼란 유발

② 개정내용

1 양도세 큰 틀 이해 제고 위해 개관규정 및 개괄규정 신설

○ 일반 국민이 양도세에 대해 최소한 개략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양도세 계산구조 및 관련 조문을 설명하는 개관규정 신설

○ 한 제도 내에 여러 세부 유형 존재(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등)시, 세부 유형 제목 및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개괄규정 신설

2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복잡·난해한 규정 조문 재구조화

○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등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 ①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②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③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기타 順으로 규정

○ 동일 내용이 자주 반복되는 경우에는 정의규정 신설 후 인용

3 가독성 제고 위해 단문 사용 및 도표·계산식 활용

○ 지나치게 긴 문장은 짧은 단문을 사용하여 분리 기술

○ 예외의 예외 규정은 예외 규정과 분리하여 별도 기술*

* 하나의 항에 예외 규정과 그 예외에 대한 예외 규정을 동시 규정시, 단문 형식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감안

○ 도표·계산식 활용시 이해가 쉬운 경우에는 도표·계산식으로 대체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

① 제도 개요

□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 또는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거나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신탁계약정보, 재산가액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외신탁명세를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

□ 불이행시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의 과태료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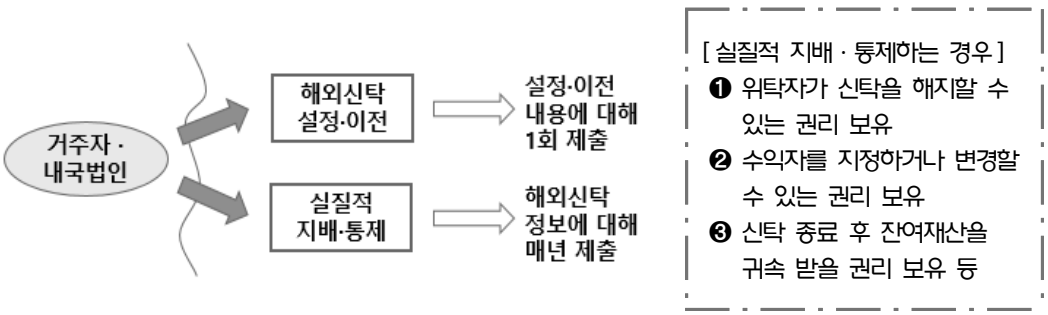

② 신탁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신탁재산가액은 신탁 설정 · 이전일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의 시가(時價)에 따르며, 시가 산정 및 평가가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신탁재산가액 평가와 관련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65조 평가 규정을 준용하며,

○ 재산의 종류,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취득가액*으로 함

* 현행 해외부동산등 자료제출의 경우 취득·처분가액을 기준으로 취득·보유현황 등 신고

(2) 임직원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① 도입 이유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근무하는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주식기준보상*을 받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가 발생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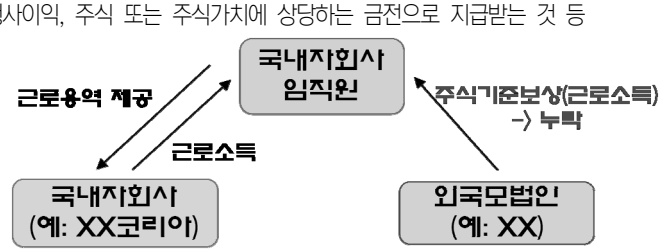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의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하여 조세회피 방지 및 성실신고 기반 마련

② 제도 개요

□ 국내자회사 또는 지점에 임직원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에 대한 제출의무를 부여

구 분	주요 내용
제출대상자	▪ 임직원*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 임직원이었던 자 포함
제출요건	▪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지급받는 경우 * 내국법인 임직원: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임직원: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
제출자료	▪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등 부여, 행사·지급내역 및 이익, 관련 임직원 인적사항 등
제출시기	▪ 주식기준보상등 행사/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3)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내용

□ (개요) 매입자가 물품 구매시 대금을 금융기관의 전용거래계좌*에 입금하면 금융기관이 부가가치세를 과세관청에 납부

* 국민, 농협, 대구, 신한, 우리, 기업, 하나은행 등 7개 금융기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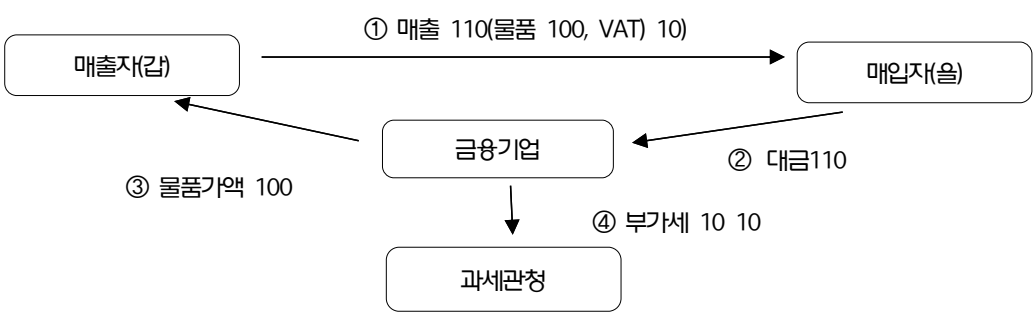

※ 을이 대금 110(물품가액 100, 부가세 10)을 금융기관에 송금하면 금융기관은 물품가액 100은 갑에게 지급, 부가세 10은 국세청에 납부

□ (대상물품) 금지금('08.7월), 고금('09.7월), 구리스크랩('14.1월), 금스크랩('15.7월), 철스크랩('16.10월)

②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배경

□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을 비철금속류(알루미늄 · 납 · 아연 · 주석 · 니켈 등)로 확대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및 제도의 실효성 제고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① '우회덤핑'의 의미

□ 우회덤핑이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특성, 생산지 또는 선적지를 변경하는 등 방법으로 해당 조치를 우회하여 그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의미함

○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며,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수도 증가* 중으로 우회덤핑의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음

* ´23.7월 현재 기준 20개 품목, 24건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

②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 배경

□ 현행 관세법령은 우회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없어,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움

○ 우회덤핑 물품은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현행 신규 물품과 마찬가지로 원심조사로 진행함에 따라 조치까지 장기간* 소요

* 우회덤핑 조사는 일반적으로 완화된 덤핑률 산정과 산업피해 판정이 요구되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나, 신규 원심조사는 통상적으로 12개월 소요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

① 제도 개요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 중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개정취지)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고액의 관세를 포탈하는 자의 명단도 공개할 필요

○ 최근 수입물품 가격 저가신고 등 관세포탈 사례 및 관세포탈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

* 관세포탈범 적발 금액 및 건당 금액(억원): ('21) 2,046/29.7, ('22) 3,228/64.6

○ 「국세기본법」은 고액(포탈세액 등이 연간 2억원) 조세포탈범의 인적사항·포탈세액 등도 공개

○ 현행 「관세법」에 의하면 관세포탈액이 크지만 체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 정도가 높더라도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

* (현행) 1년 경과 체납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만 공개

□ (개정내용)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연간 2억원 이상인 자를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

③ 납세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관세포탈범은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보다 불법행위의 정도가 높아 과도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움

(6)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

① 개정취지 및 개정내용

□ (주택 개념 구체화) 소득세법은 주택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만 규정하여,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예측가능성 저해

○ 「주택법」 상 정의 규정을 활용하여, 주택의 시설구조상 특성*을 소득세법상 주택 정의에 반영·구체화

* 출입문,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로 별도 설치되는 등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보유기간 특례) 건축물을 장기간 상업용 등으로 사용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위해 양도 직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사례 다수 발생 → 조세회피 방지 필요

○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을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 비과세 요건 : ❶양도일 기준 1세대 1주택자 + ❷2년 이상 보유 + ❸(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인 경우, ❶, ❷ 중 큰 금액 적용

❶ 전체 보유기간(취득일~양도일)에 대해 일반 공제율(최대 30%) 적용한 금액

❷ '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최대 80%) 적용한 금액

② 주택 개념 구체화로 세부담에 변화가 있는지?

□ 「주택법」 규정, 과세관청 집행 실태 등을 반영한 개정으로 주택 여부 판정 및 양도소득세 등 세부담에는 변화 없음

○ 세법상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과세관청간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③ 적용시기

□ (주택 개념 구체화) '24.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보유기간 특례) 납세자 예측가능성 등 감안, 1년 유예기간을 두어 '25.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7)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① 제도보완 취지

□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편의를 위해 도입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가 보다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제도 보완

○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 ❶ FTA협정이 정한 범위에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고, ❷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에 관해 간소한 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음(FTA특례법 제12조)

- FTA협정관세 적용 과정에서 수출자가 어려움을 겪는 원산지증명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입

○ 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자격 신청 과정에서 제출서류 조작 등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 「FTA특례법」에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과세형평 제고 및 기반 강화

(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①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은?

□ (발급 사업자에 대한 혜택) 현금영수증 발급 세액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공제

□ (수취 근로자에 대한 혜택)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등 소득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연간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

②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미발급 가산세) 미발급금액의 20%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에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경우
○ (미발급 가산세*) 소비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금액의 5%
* 건당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는 가산세 제외

(2) 플랫폼 종사자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소액부징수 개요

□ 징수하는 세액보다 징세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을 고려해 징수세액이 소액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제도
○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세율 3%, 지방소득세 제외)의 경우 1,000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 다만, 원천징수만 배제될 뿐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의무는 있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님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개정내용)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중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소득에는 소액부징수의 적용 예외 인정

□ (개정취지) 음식배달용역 등 인적용역의 경우 건별로 소득을 지급하는지 또는 주/월별로 지급하는지에 따라서 원천징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원천징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

* 건당 소득에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으로 원천징수 배제될 수 있으나, 주·월단위로 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세액 1,000원 초과하여 원천징수대상에 해당

□ (세부담 영향)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과 원천징수세액간 차이가 있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므로 실제 세부담에는 영향 없음

※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국세청은 납부 · 환급세액 등을 안내, 간편하게 납부 · 환급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중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합리화

① 제도 개요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지분율에 따라 일정비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 지분비율에 따른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 >

피출자법인 지분비율	20% 미만	20%이상~50% 미만	50% 이상
익금불산입률	30%	80%	100%

□ (익금불산입 배제) 단기 보유주식 배당 또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 배당기준일 전 3개월 내 취득주식 배당금(포트폴리오 투자)
- 배당금 소득공제(법인단계 이중과세 조정)로 법인에서 과세하지 않은 소득
- 100% 감면 법인 배당금(수도권 밖 본사이전, 조특법상 조세감면)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 및 이중과세 조정이 필요없는 경우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에 추가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평가 적립금 감액 배당

○ 유상감자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V. 기타

(1) 연결납세방식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

① 연결납세 제도 개요

□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법인의 소득과 결손금을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제도

* '10년 사업연도부터 시행

○ (제도취지) 기업구조 선택에 대한 조세중립성 확보

○ (연결대상) 연결모회사가 출자지분의 90% 이상 보유하는 자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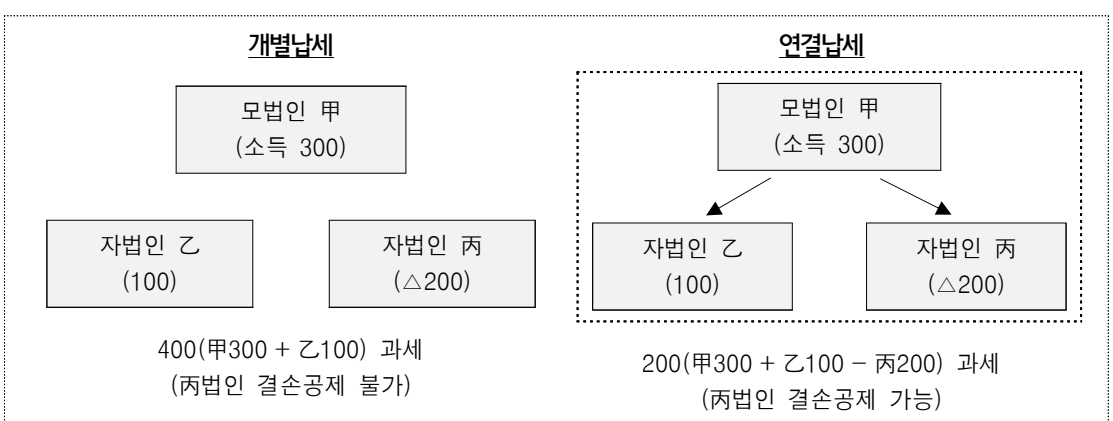

②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 (현행 제도) 연결납세 신청 후 5년간 연결납세방식 의무 적용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하려는 경우 연결납세를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

□ (개정안) 연결범위 확대*에 따라 연결집단에 연결자법인이 추가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결납세방식 포기 허용

* '24년부터 연결범위가 100% 보유 자회사에서 90% 보유 자회사로 확대

⇨ 연결납세방식 적용에 대한 납세자 선택권 부여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

① 제도 개요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

*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

② 제도 효과

□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의 취득 시점부터 누적된 자본이득을 온전히 과세함으로써 공평과세 실현

○ 이월과세 미적용 시 '증여재산 공제* + 증여 당시 증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함에 따른 양도차익 감소' → 조세회피 가능

* 공제한도 : (배우자) 6억원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사례 >

'갑' 주택취득('15년, 2억원) ⇒ '갑→을' 증여('20년, 6억원) ⇒ '을' 양도('24년, 10억원)

※ '을'은 '갑'의 배우자

①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차익 4억원(10억원-6억원*) 과세

* 취득가액 : 증여 당시 증여가액 = 6억원

② 이월과세 적용: 양도차익 8억원(10억원-2억원*) 과세

* 취득가액 : '갑'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 2억원

①이월과세 미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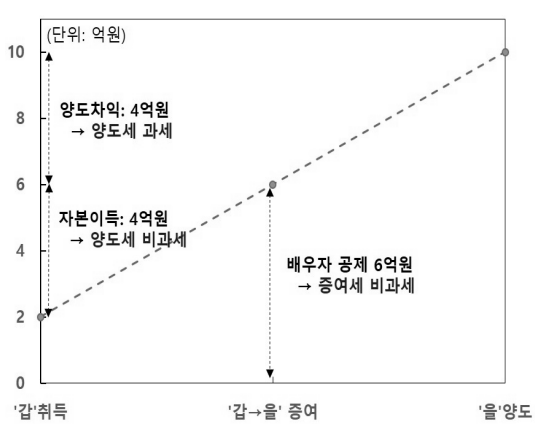

②이월과세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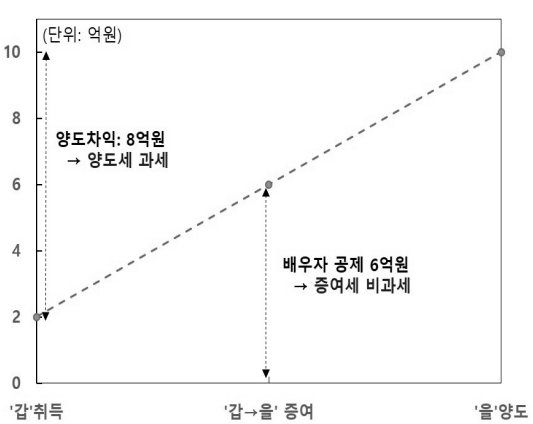

(3)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① 간이과세 제도 개요

□ (개요) 기장능력 등이 부족하여 신고·납부 등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이과세 제도* 운영

* ('77년) 과세특례제도로 도입 → ('00년) 간이과세제도로 명칭 변경

□ (기준) 직전연도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영수증 발급,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 (특례) 매출액만으로 세액계산*이 가능하며, 연 1회 신고

* 과세표준(공급대가)×당해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10%,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② 간이과세 포기 철회 도입 취지

□ 간이과세자는 필요*에 따라 간이과세자 특례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포기 신고 후 3년 동안 계속 적용 의무

* 거래 특성 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등

□ '21년 간이과세 제도 개편*에 따라 예외적인 경우에 3년 이내라도 간이과세 포기 철회를 허용

* (종전)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영수증 발급) → (현행)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면서 세액계산을 간편하게 적용받도록 간이과세 적용

(4)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천연가스(CNG)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취지

□ 동 특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매연 배출이 많은 경유버스를 CNG 버스로 대체 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정책 목표 달성*

* '00년 도입되어 현재까지 운용 중으로 '21년 기준으로 전국 시내버스의 약 75%가 CNG 버스임

○ 특히 보다 강화된 환경 개선 목표에 맞춰 전기·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 유지 필요

* 저공해차 분류체계 개편('24년 CNG 버스 제외 예정)에 따라 전기·수소전기 버스로의 수요 전환을 위해 CNG 버스 구매지원 예산사업 종료 예정('24년)

□ 동 특례를 종료하더라도 현재 전기 · 수소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신규 수요는 이를 통해 보완 가능

(5)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개요) 거주자 ·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개설 ·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신고하는 제도

□ (신고 대상)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잔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 은행 예 · 적금 계좌, 증권거래 계좌, 파생금융상품거래 계좌 등 보유한 현금 · 주식 · 채권 · 펀드 · 보험 · 가상자산 등 신고

□ (신고의무 면제) 단기 거주 외국인 · 재외국민,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타 법률상 관리 · 감독이 가능한 경우

□ (제재규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 등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20% 과태료 부과(20억원 한도)

○ (신고위반금액이 50억원 초과시) 명단공개, 형사처벌*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벌금

*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음

○ (소명요구) 신고의무 위반시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할 수 있음(미소명시 20% 과태료)

② 개정 취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역외탈세 방지, 정보수집 등을 위해 거주자 · 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 파악하는 것으로,

○ 근로 · 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국제기관의 종사자 및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에 대해서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필요하여 신고의무 면제대상을 법령으로 명확화

(6)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

① 제도 개요

□ 용도세율 제도란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동일한 물품이나, 통관 이후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사전에 세관장에게 낮은 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제도

○ 세관당국은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이 수입 후 일정기간 당해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사후관리*

* 용도외 사용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추징

○ 현행 관세법은 용도세율 적용대상을 할당관세 등 9개로 한정

1) 적용대상(9개) : 잠정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일반특혜관세

2) 제외대상(4개) :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

② 개정 내용

□ 용도세율 적용 대상에 덤핑방지관세 등 4개 탄력세율제도를 포함하고 관련 규정 합리화 등 정비

❶ (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편익관세에서도 부과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차등적인 관세율을 부과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및 납세자 재산권 보장

* 예) 국내산업 보호를 위하여 수질정화제용 수산화알루미늄에만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면 충분하나, 용도세율을 적용할 수 없어 인조대리석용 수산화알루미늄에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문제 등을 정밀하게 해결 가능

❷ (용도세율 신청 제외 합리화)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미리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전용물품)' 신청 제외*

❸ 전용물품 확인 받은 경우 사후관리 대상 제외됨을 명확화

(7)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① 보정제도 개요

□ 관세법령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보정제도'를 운영

○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소신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세관장에게 세액보정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까지 부족세액 납부(「관세법」 제38조의2)

○ 이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보정이자를 징수하되, 과소신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를 면제

*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9/1000)

② 개정 취지

□ FTA 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경우 보정이자가 면제되는 사유를 「관세법」이 아닌 「FTA특례법」 상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납세자의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❶ FTA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수입자 귀책 없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등을 보정이자 면제사유에 포함하되,

* FTA협정관세는 수입자가 아닌, 상품을 수출한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됨

❷ 구체적인 면제사유는 「FTA특례법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8) 공매제도 개요

① 제도 개요

□ 강제징수 절차* 중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하는 단계에서 일반인에게 압류재산을 공개 매각하는 제도

* 체납자의 재산 ①압류 → ②매각 → ③청산

○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 대행 의뢰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대행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하여 체납액 충당

② 공매 절차

□ 공매공고 → 입찰 및 개찰 → 매각결정 → 매수대금 납부 → 소유권 이전 및 금전 배분

○ (공매공고) 공매재산 현황, 입찰기간, 개찰일시,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기일 등을 공고하고 체납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함

○ (입찰 · 개찰) 공매보증을 제공하며 매수신청을 하고 개찰일에 매수신청인 중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결정함

○ (매각결정) 매수인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각결정기일에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공매재산의 매수인으로 결정

○ (매수대금 납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면 공매재산을 취득하고 공매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진행함

○ (배분) 배분기일에 매각대금을 배분계산서*에 따라 공매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함

*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

(9)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① 도입취지 및 내용

□ (취지)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 (내용) 압류재산의 매수인이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매수대금 상계 가능

② 제도 개요

□ 매수인이 공매재산의 채권자인 경우 매수대금 납부 시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차감한 차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대상) 공매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한 자 및 등기된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3의2②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 있는 임차인

○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 납부 불허

○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 공매재산의 매각대금 등을 체납자, 채권자 등에게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적은 문서

○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해 다른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통 화 명	7월 3일(월)	7월 4일(화)	7월 5일(수)	7월 6일(목)	7월 7일(금)
미 달 러 (USD)	1319.40	1310.00	1301.70	1300.80	1303.80
위 안 화 (CNH)	181.77	180.88	179.53	179.87	179.44
일 본 엔 (JPY)	913.87	905.57	900.92	900.05	905.51
유 로 화 (EUR)	1439.47	1429.80	1416.38	1411.89	1420.36
영 국 파 운 드 (GBP)	1675.37	1662.46	1654.85	1652.47	1661.69
캐 나 다 달 러 (CAD)	995.81	988.75	984.35	979.11	975.53
홍 콩 달 러 (HKD)	168.36	167.22	166.22	166.31	166.68

통 화 명	7월 ③0일(월)	7월 11일(화)	7월 12일(수)	7월 13일(목)	7월 14일(금)
미 달 러 (USD)	1307.30	1303.80	1295.00	1291.40	1276.20
위 안 화 (CNH)	180.29	180.16	179.26	179.43	177.82
일 본 엔 (JPY)	919.11	922.82	923.25	932.92	925.22
유 로 화 (EUR)	1433.39	1434.44	1426.12	1437.97	1432.66
영 국 파 운 드 (GBP)	1677.85	1677.21	1675.41	1677.72	1676.16
캐 나 다 달 러 (CAD)	984.56	982.00	979.13	979.33	973.53
홍 콩 달 러 (HKD)	167.02	166.56	165.45	165.02	163.16

통 화 명	7월 17일(월)	7월 18일(화)	7월 19일(수)	7월 20일(목)	7월 21일(금)
미 달 러 (USD)	1265.80	1266.10	1261.60	1265.40	1265.80
위 안 화 (CNH)	177.15	176.69	175.66	175.55	175.97
일 본 엔 (JPY)	911.99	912.87	908.31	906.03	904.37
유 로 화 (EUR)	1420.92	1423.10	1416.97	1417.63	1409.66
영 국 파 운 드 (GBP)	1656.68	1655.43	1644.75	1636.79	1629.40
캐 나 다 달 러 (CAD)	956.62	959.38	958.37	961.26	960.80
홍 콩 달 러 (HKD)	161.97	162.03	161.47	162.06	162.00

통 화 명	7월 24일(월)	7월 25일(화)	7월 26일(수)	7월 27일(목)	7월 28일(금)
미 달 러 (USD)	1281.70	1283.80	1280.70	1278.70	1273.40
위 안 화 (CNH)	178.55	178.30	178.87	178.64	178.33
일 본 엔 (JPY)	904.61	907.12	908.78	910.59	914.40
유 로 화 (EUR)	1426.40	1420.14	1415.37	1417.38	1397.94
영 국 파 운 드 (GBP)	1647.50	1645.45	1651.40	1653.49	1629.32
캐 나 다 달 러 (CAD)	969.33	974.68	971.29	968.05	962.69
홍 콩 달 러 (HKD)	163.95	164.31	163.95	163.91	163.19

※상기의 기준재정환율은 금융결제원의 자회사인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한 내용으로 외화외상매출의 회계반영, 결산 평가와 부가세영세율 과세표준계산시 적용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http : //www.smbs.biz, 전화 : 3705-5500)에서 당일의 기준환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